

일반 주해
미합중국 관세양허표

1. 미합중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(HTSUS)와의 관계: 이 양허표상 규정은 일반적으로 HTSUS식으로 표현되며,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TSUS의 일반 주해,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의하여 구율된다.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TSUS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,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TSUS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.

2. 기준관세율: 이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06년 1월 1일 발효 중인 미합중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열의 일반관세율을 반영한다.

3. 양허단계: 부속서 2-나(관세철폐)의 제1항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,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R 및 S를 포함한다.

가. 단계별 양허유형 R로 규정된 상품의 경우, HTSUS 제98류제2절 미합중국 주 3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용될, 조립된 물품에 수입의 시점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이행 10년차 1월 1일까지는 이 양허표 제1류 내지 제 97류의 적합한 규정에 명시된 양허단계별 의무에 따라 그 물품 자체의 전체가액에 적용되는 세율이 되며, 그 시점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. 그리고

나. 단계별 양허유형 S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고, 그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 발효일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. 관세 항목 98120020, 98120040, 98130005, 98130010, 98130015, 98130020, 98130025, 98130030, 98130035, 98130040, 98130045, 98130050, 98130055, 98130060, 98130070, 98130075 및 98140050에 대하여는 무관세라 함은 담보가 필요 없는 무관세를 말한다.

4. 두 개 이상의 구분되는 동력원이나 연료원을 가지는 자동차(하이브리드 차)로서,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 또는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이 그 차의 동력 시스템에 본질적 특성을 제공하는 차는 그 하이브리드 차가 어디로 분류되는 지에 관계없이, 동일한 실린더 용량과 점화 장치 유형을 가진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이나 압축점화식의 피스톤 내연기관이 단일 동력원이나 연료원인 자동차에 제공되는 관세 대우가 부여된다.